제225회 임시회 광 진 구 의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십사보고서



2019. 5. 2.

기획행정위원회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520호 2019. 5. 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 4. 11.

나. 회부일자 : 2019. 4. 26.

다. 상정일자: 2019. 4. 29.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정해영 행정국장

나. 개정이유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안 제3조)
-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 예산조치: 추후 반영

- 입법예고 (2019. 3. 13. ~ 4. 1.)결과: 별도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4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장기간 개정이 없었던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학교체육 시설 이용 동호인에 대한 사용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동호인에 대한 사용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활체육진흥 시책 마련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진흥조례가 대부분 제정되어 있음. 다만,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 사업만을 규정한 간소한 형태의 조례(광진구도 여기에 속함)부터 위원회 구성, 체육교실 운영, 선수육성, 표창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음. 이 중 조례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지원을 명시한 곳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강동구(2019.1.2.일부개정) 1곳인 것으로 파악됨.

조례 제정 현황

- 「생활체육 진흥 조례」<u>서울시 제정현황</u> : 서울시 및 25개구
 -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규정 현황 : 1개(강동구)
- 「생활체육 진흥 조례」 <u>전국 제정현황</u> : 204개 자치단체
 - ※ 김포시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10% 지원 등의 사례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외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 조례 제정 목적에 구민의 "건강증진" 외에 "여가선용"을 추가하였음. 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2015. 3. 27.)된 것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생활체육", "체육동호인조직" 1)의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으로 정의하여 조례의 내용 이해를 돕고 있음.

다만, 제4조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안 제3조에서는 조문제목을 "생활체육의 육성"에서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변경하였는데, 상위법의 제명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 본 조례의 목적이 생활체육의 "진흥"에 있는 점, 진흥의 개념이 '향상·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육성과 진흥의 개념 차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육 성	진 흥
길러 자라게 함. ※비슷한말 양성(養成) • 기술자 육성. • 체조 선수 육성. • 중소기업 육성.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 • 문예 진흥. • 진흥 사업. • 산업 진흥에 힘쓰다.

¹⁾ 국민생활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quot;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quot;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²⁾ 강동구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존 1항으로 구성되었던 조문을 2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제2항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사업 발굴과 체육동호인 활동과 조직 지원을 규정하였음. 생활체육 진흥 시책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으나,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생략되고 "체육동호인 활동과 조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안 제4조에서는 세부항목을 다소 조정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제1항 제7호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관련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 원"규정을 신설한 것임.
- 이는 지난 2018.12.31. 제정된「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에 국한하여 사용료가 지원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민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현황 조사' 3)결과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률은 '공공체육시설'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체육시설(21.6%), 기타 부대체육시설(11.8%)등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40대이상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30대는 '민간체육시설', 10대는 '학교·직장체육시설'이용이 많았음.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체육시설로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2018}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진구의 체육시설은 4개소로 2017년 기준 20인 이상 동호인조직 등이 체육시설을 대관하고 지출한 비용은 282,593천원이며, 뚝섬한강공원 및 어린이 대공원 체육시설의 동일기준 대관료는 33,600천원임.4)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관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억4천8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2019년 본예산에 는 학교체육시설 지원 예산 5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예산 확보 가 필요하며, 자양유수지 다목적체육관 개관 이후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광진구 체육시설 현황5)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진구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 2층/지상 4층	대·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센터	구천면로 14 (광장동)	(총면적 7,914㎡)	에어로빅실 등
광진문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 1층	수영장, 헬스장, 실내 골프
예술회관	능동로 76 (자양동)	(총면적 3,817.12㎡)	연습장 등
중곡문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 1층/지상 4층	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체육센터	능동로 433 (중곡동)	(총면적 6,268㎡)	에어로빅장, 다용도실 등
광장동실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상 2층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140길 40 (광장동)	(총면적 671.25㎡)	

⁴⁾ 개정안 비용추계서 참고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개정은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단체등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조례 제정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개정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하고 적절한 개정이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정한 주민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의무에 근거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므로 해당 내용 신설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